

특 허 법 원

제 5 부

판 결

사 건 2020허1991 권리범위확인(특)  
원 고 주식회사 A

대표자 B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윤우

피 고 C 주식회사

대표이사 D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승희

변 론 종 결 2020. 5. 20.

판 결 선 고 2020. 7. 10.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2020. 2. 3. 2019당1994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이 유

### 1. 기초사실

#### 가.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2호증)

- 발명의 명칭: 전해장치 및 이를 이용한 오수처리시스템
- 출원일/등록일/특허번호: 2012. 9. 14./2015. 6. 23./제10-1532433호
- 특허권자: 피고
- 청구범위

【청구항 1】 오수 및 해수가 인입되는 **제1 탱크(10)**; 상기 제1 탱크(10)에서 배출된 분뇨를 분쇄하는 **마쇄장치(20)**; 상기 마쇄장치(20)에서 분쇄된 오수를 전기분해처리하는 **제1 전해장치(30)**; 및 상기 제1 전해장치(30)에서 처리된 처리수가 인입되는 **제2 탱크(40)**를 포함하며(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상기 제1 탱크(10)는 오수 및 해수의 수위를 감지하는 다수의 레벨센서(L); 상기 레벨센서(L)와 제어부를 연결하는 헤드부(H); 내부로 오수를 유입하는 오수인입라인(W); **제1 전자밸브(V1)**를 통해 해수가 유입되는 **해수인입라인(I)**; 및 내부의 가스를 방출하는 가스방출부(G)를 포함하며(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상기 제2 탱크(40)는 해수 및 처리수의 수위를 감지하는 다수의 레벨센서(L); 상기 레벨센서(L)와 제어부를 연결하는 헤드부(H); 제1 전해장치(30)에서 처리된 처리수 및 **제3 전자밸브(V3)**를 통한 해수를 유입하는 **해수인입라인(I)**; 및 내부의 가스를 방출하는 가스방출부(G)를 포함하며(이하 '구성

요소 3'이라 한다), 상기 제1 전해장치(30)는 **외부면은 도체임과 동시에 내부면은 부도체로 이루어진 파이프형 몸체(31); 및 상기 몸체(31) 내부에 수용되고 + 전극을 띠는<sup>1)</sup> 전극봉(33)**을 포함하는 것(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을 특징으로 하는 오수처리시스템(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부르고 다른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호칭한다).

**【청구항 2】 내지 【청구항 4】 각 기재 생략**

**【청구항 5】 외부면은 도체임과 동시에 내부면은 부도체로 이루어진 파이프형 몸체(31); 상기 몸체(31) 내부에 수용되고 + 전극을 띠는 전극봉(33); 및 상기 몸체(31)로부터 상기 전극봉(33)을 지지하기 위한 부도체 재질의 다수의 지지대(35)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해장치.**

**【청구항 6】 (삭제)**

**【청구항 7】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전해장치의 전극봉(33)은 - 전극을 띠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해장치.**

**【청구항 8】 제1항 또는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전해장치(30) 또는 상기 제2 전해장치(50)는 상기 제5항의 전해장치 및 상기 제7항의 전해장치가 교대로 배열되거나, 상기 제5항의 전해장치가 중복배치된 후에 상기 제7항의 전해장치가 중복배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해장치.**

**【청구항9】 제5항 또는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전해장치의 전극봉(33)은 바이폴라전극, 모노폴라전극, 코일, 볼트, 플레이트, 다공성 플레이트 중에서 선택된 어느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해장치.**

---

1)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갑 제2호증)에는 "띠는"으로 표기하였으나, 맞춤법상 "띠는"이 올바른 표기이므로 이 판결에서는 모두 "띠는"으로 고쳐 기재한다. 이하 같다.

○ 발명의 개요

㉠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

본 발명은 ... 마쇄처리장치를 통하여 분뇨 덩어리로 인한 펌프 막힘 현상을 해소하고, **전해장치를 파이프 형태로 제공함에** 따라서 고압을 통한 대용량의 오수처리가 가능하게 하고, **파이프 형태의 전해장치를 교차배열함으로써** 컴팩트한 구성을 가능하게 하며, **이중의 전해장치를 채용한** 구성을 통하여 오수에 함유된 유기물의 전기분해 시의 산화분해력을 높여 오수처리효율이 증대된 전해장치 및 이를 이용한 오수처리시스템에 관한 것이다(문단번호 [0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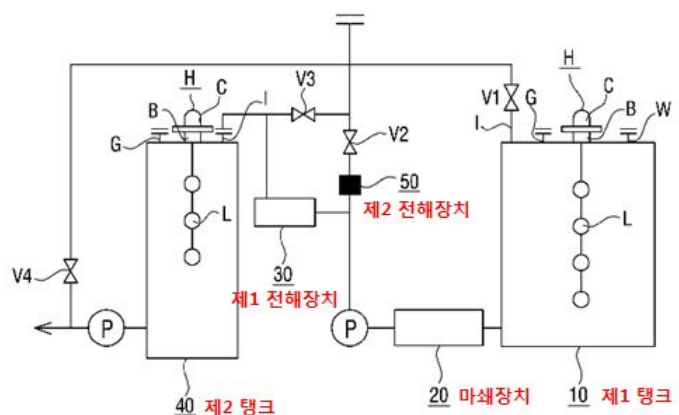
㉡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목적은 상술한 종래의 오수처리시스템과 달리 오수저장탱크의 외부에 분뇨의 마쇄장치를 구비함으로써 분뇨 덩어리로 인한 막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오수처리시스템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전해장치를 펌프 타입으로 구성함으로써** 펌프 내부를 유동하는 오수 및 해수에 고압을 가하는 것이 가능하여서, 대량의 오수처리능력을 보유할 수 있는 전해장치 및 오수처리시스템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상기 기능을 제공할 수 있으면서도, **+ 극을 갖는 펌프 타입 전해장치와 - 극을 갖는 펌프 타입 전해장치를 교차배열함으로써** 컴팩트한 구조를 제공할 수 있는 전해장치 및 이를 이용한 오수처리시스템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오수 및 해수를 전기분해하는 제1 전해장치에 해수만을 전기분해하는 제2 전해장치를 부가함으로써 차아염소산 농도를 높여 오수의 살균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는 오수처리시스템을 제공함에 있다(문단번호 [0005]~[0008]).

㉢ 주요 구성

도 1 내지 도 4를 참고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를 설명하면, 오수처리시스템은 크게 제1 탱크(10), 마쇄장치(20), 제1 전해장치(30) 및 제2 탱크(40)로 구성된다(문단번호 [0019]).

제1 탱크(10)는 오수 및 해수가 내부로 유입되는데, 제1 탱크(10)의 내부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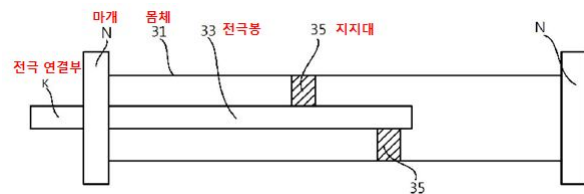
[도면 1]

오수 및 해수의 수위를 감지하는 다수의 레벨센서(L)가 형성되며, 상기 레벨센서(L)와 제어부를 연결하기 위한 헤드부(H)가 형성된다. 헤드부(H)는 상기 레벨센서(L)를 제어부와 전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자대(F) 및 제어부에 연결되는 케이블 그랜트(E)를 포함하는 본체(B)와 상기 본체(B)의 상부에 안착되는 캡(C)으로 이루어진다. 상기 본체(B)와 상기 캡(C)은 서로 돌림결합으로 결합하는데, 상기 본체(B)가 슛나사의 기능을 하며, 상기 캡(C)이 암나사의 기능을 한다. 이러한 돌림결합으로 인하여 결합 및 해제를 용이하게 할 수 있으므로 기계의 유지보수를 더욱 용이하게 할 수 있다. 오수인입라인(W)을 통하여 내부로 오수를 유입하며, **해수인입라인(I)을 통하여 제1 전자밸브(V1)를 통해 해수가 내부로 유입된다.** 가스방출부(G)는 오수 및 분뇨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외부로 방출하기 위해 형성한다(문단번호 [0020]).

마쇄장치(20)는 상기 제1 탱크(10)에서 배출된 분뇨를 분쇄하여 잘게 부순다. 도 5를 참고하여 설명하면, 마쇄장치(20)의 상부에는 모터(M)가 장착되어 마쇄장치(20)의 회전을 가능하게 하며, 마쇄장치(20)의 하부에는 커터(R)를 장착하여 분뇨 덩어리를 분쇄하도록 한다(문단번호 [0021]).

제1 전해장치(30)는 상기 마쇄장치(20)에서 분쇄된 오수를 전기분해처리하며, 제2 전해장치(50)는 제2 전자밸브(V2)를 통해 공급되는 해수만을 전기분해하기 위하여 형성한다. 도 6 및 도 7을 참고하여 전해장치(30, 50)의 내부구성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전해장치의 몸체(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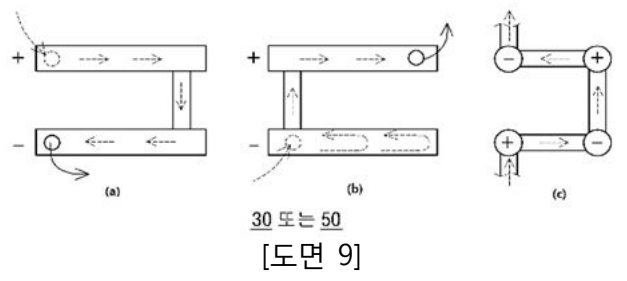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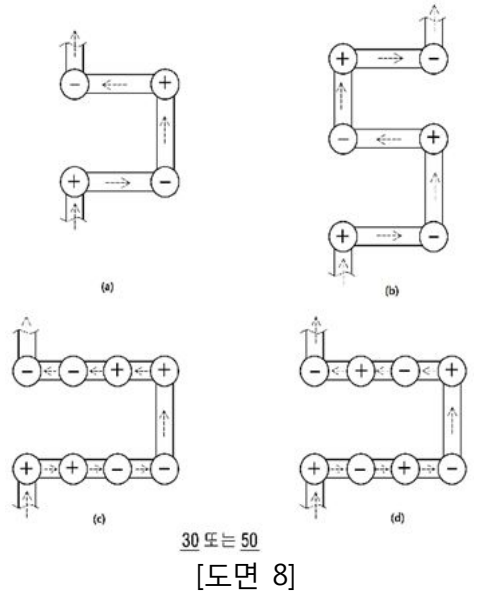
**는 몸체(31)의 외부면은 도체임과 동시에 내부면은 부도체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또 다른 실시예에 의하면 몸체 자체가 부도체의 파이프형으로 형성할 수도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 예에



[도면 6]

의하면, 상기 몸체(31)의 양 말단은 부도체의 마개(N)로 이루어지며, 일 말단에는 전극연결부(K)가 형성될 수도 있다. 전극봉(33)은 상기 몸체(31) 내부에 수용되고 + 전극을 띠지만,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 예에 의하면 상기 전해장치의 전극봉(33)은 - 전극을 띠는 것일 수도 있다. 또한,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 예에 의하면 전해장치의 전극봉(33)은 바이폴라전극, 모노폴라전극, 코일, 볼트, 플레이트, 망사형 플레이트 중에서 선택된 어느 하나일 수 있으며, 대상 처리수의 용량 및 현장의 설치환경 및 조건에 따라 선택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설명하

면, 파이프형 몸체(31)에 봉이나 플레이트 또는 다공성 플레이트 전극이 삽입될 수 있으며, 처리수에 대한 처리효율을 상승시키기 위하여 파이프 내부에 체류속도를 높이고, 전류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코일 형태의 전극을 형성할 수도 있다. 지지대(35)는 상기 몸체(31)로부터 상기 전극봉(33)을 지지하기 위하여 부도체 재질로 다수 형성한다. 이러한 구성을 갖는 전해장치(30, 50)의 배열을 도 8 및 도 9를 참고하여 설명하면, 상기 제1 전해장치(30) 또는 상기 제2 전해장치(50)는 청구항 제5항의 전해장치 및 청구항 제7항의 전해장치가 도 8의 (a),(b),(d)와 같이 교대로 배열되거나, 도 8의 (c)와 같이 청구항 제5항의 전해장치가 중복배치된 후에 청구항 제7항의 전해장치가 중복배치될 수도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예에 의하면, 도 9의 (a)와 같은 전해장치의 배열을 1단에 형성한 후에 도 9의 (b)와 같은 전해장치의 배열을 1단 위에 배치하는 2단의 구성을 통하여 본 발명에 의한 전해장치(30, 50)를 구성할 수도 있다. 이러한 (a)와 (b)가 2단으로 형성된 전해장치의 정면도는 도 9의 (c)와 같다. 이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한 전해장치(30, 50)를 파이프형으로 형성함으로써 보다 컴팩트한 오수처리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다 (문단번호 [0022]).



**나. 확인대상발명(갑 제1호증의 [별지 2])**

심판청구인인 원고가 특정한 '오수처리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설명서 및 도면은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선행발명들<sup>2)</sup>**

2)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확인대상발명이 자유실시기술인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므로, 선행발명들의 자세한 내용에 관한 설명은 생략한다.

### 1) 선행발명 1(갑 제11호증)

선행발명 1은 2011. 6. 30. 공고된 대한민국 등록특허공보 제10-1045390호에 게재된 '전기분해에 의한 분뇨처리장치'라는 명칭의 발명이다.

### 2) 선행발명 2(갑 제12호증)

선행발명 2는 2011. 8. 22. 공고된 대한민국 등록특허공보 제10-1057393호에 게재된 '튜브형 전해처리장치 및 이를 이용한 폐수처리방법'이라는 명칭의 발명이다.

### 라.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9. 6. 19.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2019당1994호로 '원고가 실시하는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에 특허심판원은 2020. 2. 3. '확인대상발명은 원고가 실시하고 있고, 이 사건 특허발명과 대비하여 차이점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었으며,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1 내지 4와 동일하거나 균등한 구성을 모두 구비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

### 가. 확인대상발명이 적법하게 특정되었는지 여부

확인대상발명이 적법하게 특정되었는지는 특허심판의 적법요건으로서 당사자의 명확한 주장이 없더라도 그에 대한 의심이 있을 때는 특허심판원이나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밝혀보아야 할 사항이므로(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후656 판결

등 참조), 직권으로 확인대상발명이 적법하게 특정되었는지를 살펴본다.

### 1) 관련 법리

특허권에 관한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때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 발명은 당해 특허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데, 그 특정을 위해서 대상물의 구체적인 구성을 전부 기재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특허발명의 구성요건과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판단함에 필요할 정도로 특허발명의 구성요건에 대응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구성을 기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4후486 판결 등 참조). 또한,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에 앞서 사회통념상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확인하는 대상으로서 다른 것과 구별될 수 있는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 만약 확인대상발명의 일부 구성이 불명확하여 다른 것과 구별될 수 있는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면, 특허심판원은 요지변경이 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에 대한 보정을 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특정에 미흡함이 있다면 심판의 심결이 확정되더라도 그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명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나머지 구성만으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후3356 판결 등 참조).

### 2) 구성요소 3, 4의 각 대응구성요소가 적법하게 특정되었는지 여부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3, 4에 대응하는 각 구성요소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함에



따라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확인하는 대상으로서 다른 것과 구별될 수 있는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지도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구성요소 4 관련

(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오수처리시스템은 전해장치를 통하여 오수를 전기분해함으로써 오수에 포함된 유기물의 산화분해력을 높여 오수처리 효율을 증대시키는 것이고, 전해장치를 통하여 오수를 전기분해하기 위해서는 '+ 전극'뿐만 아니라 '- 전극'도 존재하여야 함은 이 사건 특허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에게 자명한 사항이다.

그런데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4는 '제1 전해장치(30)가 외부면은 도체임과 동시에 내부면은 부도체로 이루어진 파이프형 몸체(31)와 그 몸체(31) 내부에 수용되고 + 전기<sup>3)</sup>를 띠는 전극봉(33)을 포함한다'고 하여 '+ 전기를 띠는 전극봉(33)'만을 언급하였을 뿐 '- 전극'이 어떻게 공급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다만 구성요소 4의 제1 전해장치에서 '+ 전기를 띠는 전극봉(33)이 그 내부에 수용되는 파이프형 몸체(31)가 외부면은 도체임과 동시에 내부면은 부도체로 이루어진다'고 한정된 점에 비추어 보면 파이프형 몸체(31)가 '- 전극'으로서 기능할 수 없으므로, 구성요소 4의 제1 전해장치에 의한 전기분해가 가능하려면 별도의 '- 전극'이 필요하다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하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중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문단번호 [0022] 부분 및 청구범위의 청구항 5, 7의 각 기재사항을 보태어 살펴보면, 이 사건

3)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 전극'으로 기재되었으나, 문맥상 '+ 전기'가 맞으므로, 이하에서는 모두 '+ 전기'로 고쳐 기재한다.

제1항 발명에 '- 전극'에 관한 명시적 기재는 없으나,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구성요소 4, 즉 '+ 전기를 띠는 전극봉이 내부에 포함되는 파이프형 몸체로 이루어진 전해장치' 뿐만 아니라 그와는 반대로 '- 전기를 띠는 전극봉을 포함하는 전해장치'도 별도로 존재함을 전제로 ① + 전기를 띠는 전극봉을 포함하는 전해장치, 즉 구성요소 4의 제1 전해장치와 - 전기를 띠는 전극봉을 포함하는 전해장치를 교대로 배열하거나 ② + 전기를 띠는 전극봉을 포함하는 전해장치, 즉 구성요소 4의 제1 전해장치를 중복하여 배치한 후에 - 전기를 띠는 전극봉을 포함하는 전해장치를 중복하여 배치하는 방식으로 전기분해가 이루어지는 오수처리시스템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즉,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 구성요소 4, 즉 + 전기를 띠는 전극봉을 포함하는 제1 전해장치는 그와 극성이 반대인 '- 전기를 띠는 전극봉을 포함하는 전해장치'도 함께 설치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구성요소이다.

(나)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4의 제1 전해장치에 대응하는 확인대상발명의 제1 전해장치가 특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4에 대응하는 구성요소인 '제1 전해장치(30)'에 관하여 "제1 전해장치(30)는 **외부면과 내부면이 도체로 이루어진 파이프형 몸체(31)**; 및 상기 몸체(31) 내부에 수용되고 + 전극을 띠는 전극봉(230)을 포함하는 것"이라는 기재만 있다.

살피건대, 확인대상발명의 제1 전해장치에서도 전기분해가 일어나려면 + 전극과 - 전극이 모두 필요한데,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 전기를 띠는 전극봉만 언급하였을 뿐 - 전극이 어떻게 공급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

으며, 확인대상발명의 도면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확인대상발명의 제1 전해장치에 - 전극이 어떻게 공급되는지를 명확하게 인식할 수 없다.

다만 확인대상발명의 제1 전해장치(30)에서 파이프형 몸체(31)의 외부면과 내부면이 도체로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면, 통상의 기술자로서는 확인대상발명의 제1 전해장치(30)에 '- 전극'을 공급하는 방법에 ①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4가 전제하는 방법, 즉 '+ 전기를 띠는 전극봉을 포함하는 전해장치'와 '- 전기를 띠는 전극봉을 포함하는 전해장치'를 교대로 배치하여 - 전기를 공급하거나, '+ 전기를 띠는 전극봉을 포함하는 전해장치'를 중복 배치한 다음 '- 전기를 띠는 전극봉을 포함하는 전해장치'를 중복 배치하여 - 전극을 공급하는 방법 외에, ② 외부면과 내부면이 도체로 이루어진 파이프형 몸체를 - 전극과 연결하여 파이프형 몸체가 '- 전극'으로 기능하도록 하는 방법(2020. 5. 20. 이 법원의 제1회 변론기일에서 원고와 피고는 모두 확인대상발명은 이러한 방법을 취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도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 이처럼 확인대상발명은 제1 전해장치에 '- 전극'을 공급하는 방법 내지 수단인 것이 특정되지 않음으로써 확인대상발명의 제1 전해장치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제1 전해장치와 동일 또는 균등한 구성요소인지를 판단할 수 없게 되었는바,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확인대상발명에서 전기분해가 일어나도록 제1 전해장치에 '- 전극'을 공급하는 방법 내지 수단이 여러 가지 존재하는 점을 고려하면, 제1 전해장치에 '- 전극'을 공급하는 방법 내지 수단이 특정되지 않음으로써 확인대상발명은 사회통념상 특허발명

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확인하는 대상으로서 다른 것과 구별될 수 있는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된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확인대상발명의 도면 중 <확인대상발명의 전해관 도면>은 원고의 특허발명이 게재된 등록특허공보(갑 제10호증, 이하 '원고의 특허공보'라 한다)의 도면과 동일하므로 확인대상발명에서의 전기분해는 원고의 특허공보 중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바와 같이 음극에 연결된 분해관과 양극봉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특정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확인대상발명의 도면 중 <확인대상발명의 전해관 도면>만으로는 확인대상발명이 음극에 연결된 분해관과 양극봉을 통하여 전기분해가 이루어지는 것인지 알 수 없고, 위 도면에 표시된 도면부호들에 대해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 아무런 언급이 없어 이러한 부호들이 어떤 구성을 가리키는 것인지도 알 수 없다. 또한, 위 <확인대상발명의 전해관 도면>이 원고의 특허공보의 도면 3과 동일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확인대상발명은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의 기재에 의하여 특정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특허공보의 내용을 참작하여 확인대상발명의 도면을 파악한 후에 확인대상발명을 특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2) 구성요소 3 관련

(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3의 제2 탱크(40)는 "제1 전해장치(30)에서 처리된 처리수 및 제3 전자밸브(V3)를 통한 해수를 유입하는 해수인입라인(I)"을 포함하는 구성요소이다.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들을 참작하여 보면 구성

요소 3의 해수인입라인(I)은 제1 전해장치(30)에서 처리된 처리수와 제3 전자밸브(V3)를 통한 해수가 유입되는 라인으로 해석된다.

(나)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는 구성요소 3의 해수인입라인(I)에 대응하는 구성요소인 해수인입라인(I2)에 관하여 "제1 전해장치(30)에서 처리된 처리수를 유입하고, 제1 전자밸브를 통해 해수가 제2 탱크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제3 전자밸브(V3)가 포함된 해수인입라인(I2)"이라고 기재되었고, 확인대상발명의 도면 중 <확인대상발명의 전체 도면>에는 "해수인입라인(I2)"과 제3 전자밸브(V3)에 해당하는 부분에 "처리수만을 이송하기 위한 전용관로 및 밸브"라는 기재 및 '제3 밸브를 통해서만 처리수만 유입할 수 있으며 해수 유입이 불가하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다) 그런데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서 구성요소 3의 해수인입라인(I)에 대응하는 구성요소에 관하여 위와 같이 "해수인입라인(I2)"이라고 표시하여 "해수"가 인입되는 라인이라는 의미로 기재한 점, "제1 전자밸브를 통해 해수가 제2 탱크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제3 전자밸브(V3)"라는 기재로부터 "제3 전자밸브(V3)의 작동 여하에 따라 해수가 제1 전자밸브를 통해 해수인입라인(I2)을 따라 제2 탱크"로 유입될 가능성도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확인대상발명에서도 해수인입라인(I2)이 제1 전자밸브를 통해 해수를 유입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이 사건 심결도 이와 같이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라) 반면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서 구성요소 3의 해수인입라인(I)에 대응하는 구성요소에 관하여 위와 같이 "제1 전자밸브를 통해 해수가 제2 탱크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제3 전자밸브(V3)가 포함된 해수인입라인(I2)"이라고 기재된 점에다가 <확인대상발명의 전체 도면>의 위와 같은 기재를 보태어 보면, 확인대상발명의 해수인

입라인(I2)은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원고 주장과 같이 제3 전자밸브(V3)에 의하여 해수가 제2 탱크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고 처리수만 통과시키는 것이어서 제2 탱크로 해수를 유입시키지 않는다고 볼 여지도 있다. 확인대상발명의 도면 중 <확인대상발명의 전체 도면>에 주요 라인 부분이 굵은 화살표로 가려져 잘 인식되지 않아 제1 전자밸브와 제3 전자밸브 및 라인 간의 흐름을 잘 알 수 없으나, 위 도면과 같은 것으로 보이는 원고 제품의 상세도면(을 제5호증<sup>4)</sup>의 16면 도면)에는 제1 전자밸브에서 제1 전해장치, 마쇄장치, 제1 탱크 순으로 'Back Flushing Line'이 형성된 반면, 제1 탱크, 마쇄장치, 제1 전해장치, 제3 전자 밸브, 제2 탱크 순으로 'Service Line'이 형성된 것으로 도시된 점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확인대상발명의 특징은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에 의하여야 하므로, 위 원고 제품의 상세도면 등을 참조하여 확인대상발명을 특정할 수 없다).

(마) 이처럼 확인대상발명은 그 설명서의 기재 및 도면만으로는 확인대상발명의 해수인입라인(I2)이 해수를 유입시키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 점에서도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 나. 소결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확인대상발명은 적법하게 특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특허심판원로서는 확인대상발명에 대한 보정을 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특허심판원이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지도 아니하고 본안에 대하여 판단하여 이 사건 심결을 한 것은 위법하므로, 더 나아가 원

4) 을 제5호증은 피고가 당심 변론종결일 이후에 제출한 것이므로, 증거로 채택·조사한 것은 아니나, 참고자료로 인용한다.

고의 다른 주장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심결은 취소되어야 한다.

###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서승렬
	판사	정윤형
	판사	김동규

[별지]

확인대상발명(2019. 12. 3. 보정된 것)

○ 특허발명과 대비될 수 있는 설명서 및 필요한 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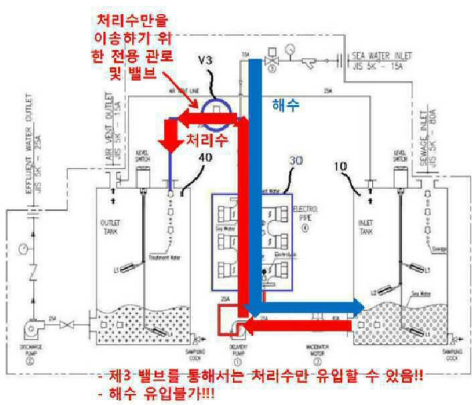
가. 특허발명과 대비될 수 있는 설명서

확인대상발명의 오수처리장치는 오수 및 해수가 인입되는 제1 탱크(10); 상기 제1 탱크(10)에서 배출된 분뇨를 분쇄하는 마쇄장치(20); 상기 마쇄장치(20)에서 분쇄된 오수를 전기분해처리하는 제1 전해장치(30); 및 상기 제1 전해장치(30)에서 처리된 처리수가 인입되는 제2 탱크(40)를 포함하며, 상기 제1 탱크(10)는 오수 및 해수의 수위를 감지하는 다수의 레벨센서(L1); 상기 레벨센서(L)와 제어부를 연결하는 헤드부(H1); 내부로 오수를 유입하는 오수인입라인(W); 제1 전자밸브(V1)를 통해 해수가 유입되는 해수인입라인(I1); 및 내부의 가스를 방출하는 가수방출부(G1)를 포함하며, 상기 제2 탱크(40)는 해수 및 처리수의 수위를 감지하는 다수의 레벨센서(L2); 상기 레벨센서(L2)와 제어부를 연결하는 헤드부(H2); 제1 전해장치(30)에서 처리된 처리수를 유입하고, 제1 전자밸브를 통해 해수가 제2 탱크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제3 전자밸브(V3)가 포함된 해수인입라인(I2); 및 내부의 가스를 방출하는 가스방출부(G2)를 포함하며, 상기 제1 전해장치(30)는 외부면과 내부면이 도체로 이루어진 파이프형 몸체(31); 및 상기 몸체(31) 내부에 수용되고 + 전극을 띠는 전극봉(230)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수처리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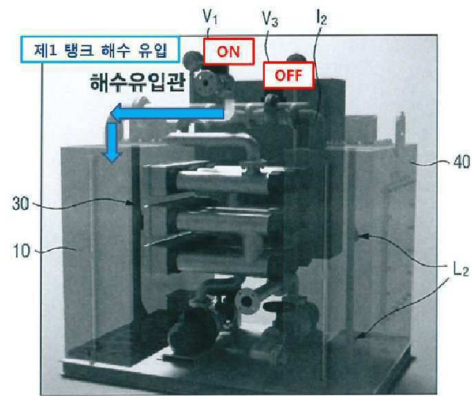
나. 특허발명과 대비될 수 있는 도면

[도면 삽입을 위한 여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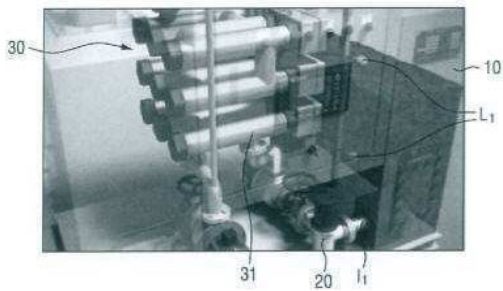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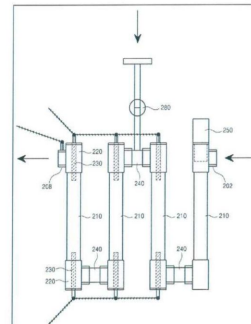
<확인대상발명의 전체 도면>



<확인대상발명의 전체 도면>



<확인대상발명의 전해관 도면>



<확인대상발명의 전해관 도면>

끝.